
1381 해외인증자료



무단 도용 배포 금지

영국 UKCA와 CE

아래에는 해외 원문 문서를 번역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1381인증·표준정보센터는 원칙적으로 해외원문 문서의 번역서비스를 하지 않으며, 간혹 경우에 따라 일부 내용을 번역할 경우에도 그 번역의 완전성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문서 번역은 업체의 몫입니다. 따라서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문서 내 링크 또는 문서 하단 * 자료 출처의 링크를 통해 원문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품에 해당 규제가 적용되는지 여부는 제품 사양을 근거로 업체에서 직접 판단하시거나 관련 기관으로 문의하셔야 합니다. 저희 1381인증·표준정보센터는 국내/해외의 법률적 유권해석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UKCA

UK CA

영국의 브렉시트에 따라 당초 2022년부터 영국에 수출하는 제품에는 영국 고유 인증인 UKCA(UK Conformity Assessed) 마크만 인정될 예정이었으나 업계의 혼란 방지 및 의견을 수렴하여 **18개의 분야에 2023년 8월 CE마크와의 병행 사용기간이 무기한 연장**되었습니다. 단, 의료기기 및 체외진단기기, 건설 장비, 삭도 장비, 무인 항공조종 시스템, 휴대용 압력기기, 철도 및 해상장비 등 특정 장비들의 경우 다른 규정에 따르고 있어 예외적인 물품에 대한 CE 마크 사용 기한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북아일랜드는 영국령이지만 브렉시트 이후 영국과 달리 유럽연합 시장 체제에 남았는데, 이러한 특이한 지위(북아일랜드 프로토콜) 때문에 2025년부터 영국과 북아일랜드 시장에 상품을 출시하고자 하는 기업은 UKCA 마크와 CE 마크 모두 구비해야 합니다.

UKCA 관련 세부 내용

UKCA 마킹을 위한 **적합성 평가 방법**에는 자기적합선언과 적합성 인증 방식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자기적합선언은 제조자가 영국규격에 따라 제품을 제조하고 있다는 적합성선언서(DoC)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기술문서를 제시하여 외부 인증기관의 개입 없이 **자기 제품에 마크를 부착**하는 것으로, 자기적합선언서에 포함될 항목에는 기업명 및 주소, 제품 모델(일련번호), 관련 규정 준수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진술문구, 필요시 인증기관의 세부정보, 제품이 준수하고 있는 규정, 담당자 성명 및 서명 등이 있습니다.

적합성인증은 UK 인증기관(Approved Body)의 **적합성 평가 검사**를 받은 후 마크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UKCA 마크에 심사기관 번호를 부착하게 됩니다.

영국의 주요 적합성 평가기관들은 신규 프레임워크에 따라 그 지위가 자동 전환됩니다. 기존 CE 마킹제도에서 Notified Body(NB)였던 영국 내 기관들은 **UKCA 마킹 제도에서는 Approved Body(AB)로 지위가 변경**됩니다. Notified Body는 EU에서 지정한 인증기관(EU 공식인증기관)이며 **Approved Body는 영국에서 승인한 인증기관(영국 공식인증기관)**을 뜻합니다. 또한 영국에 기반을 둔 인증기관은 현재와 동일하게 4자리 식별번호를 유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인증기관 BSI의 기존 NB 0086 번호는 AB 0086로 변경되게 되며, 영국의 Approved Body 리스트는 영국 정부에서 운영 중인 아래 링크를 참조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링크: <https://www.gov.uk/uk-market-conformity-assessment-bodies>)



1381 인증·표준정보센터

[작성일자 : 2024.07.]

현재까지 제품군별 UKCA 인증 절차 및 적용 규격 등 요구사항은 기존의 CE인증과 대부분 유사하나 UKCA 인증은 지정된 기관에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영국 수출의 경우, UK 지정 기관(UK approved body)에서 적합성 평가가 가능하며 기관 목록 데이터베이스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GOV UK : UK Market Conformity Assessment Bodies

https://www.gov.uk/uk-market-conformity-assessment-bodies?uk_market_conformity_assessment_body_type%5B%5D=approved-body&uk_market_conformity_assessment_body_legislative_area%5B%5D=construction-products

UKCA 마크가 법적으로 요구되는 제품군

- Toy safety
- Recreational craft and personal watercraft
- Simple pressure vessels
-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 Non-automatic weighing instruments
- Measuring instruments
- Lifts
- ATEX
- Radio equipment
- Pressure equipment
-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 Gas appliances
- Machinery
- Outdoor noise
- Ecodesign
- Aerosols
- Low voltage electrical equipment
- Restriction of hazardous substances

자료: 영국 정부 웹사이트

만약 제품이 아래 4가지 내용에 해당한다면 **UKCA 마킹을 사용**해야 합니다.

- GB 시장에 출시
- UKCA 마킹을 요구하는 법률의 적용
- 제3자 적합성 평가 필요
- 영국 적합성 평가기관에 의해 적합성 평가 수행

* 이는 기존 재고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품이 영국 적합성 평가에 의해 2021년 1월 1일 이전에 CE 마크를 획득(영국 시장 또는 EU회원국에 상품을 출시)하였다면, GB 시장에서 판매가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는 영국 정부 홈페이지 내 UKCA 마킹에 관한 자세한 안내를 하고 있는 홈페이지이므로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 Gov.uk > Guidance > Using the UKCA marking

<https://www.gov.uk/guidance/using-the-ukca-marking>

2023년 8월 1일, 영국DBT는 18개의 제품군에 CE마크의 병행 사용을 무기한 연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당초 예정되어있던 2024년 12월의 기한을 넘어서도 제조자가 CE마크나 UKCA마크를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UKCA와 CE마크의 병행 사용을 무기한 연장하기로 한 규제 분야

toys
pyrotechnics
recreational craft and personal watercraft
simple pressure vessels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non-automatic weighing instruments
measuring instruments
measuring container bottles
lifts
equipment for potentially explosive atmospheres (ATEX)
radio equipment
pressure equipment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PPE)
gas appliances
machinery
equipment for use outdoors
aerosols
low voltage electrical equipment

자세한 내용은 영국 정부사이트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GOV.UK : UK Government announces extension of CE mark recognition for businesses
<https://www.gov.uk/government/news/uk-government-announces-extension-of-ce-mark-recognition-for-businesses>

※출처

- KOTRA 해외시장뉴스 > 통상,규제 > 영국 품질인증(UKCA) 도입 2년 유예(2023.01.19.)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SITE_NO=3&MENU_ID=90&CONTENTS_NO=1&bbsGbn=244&bbsSn=244&pNttSn=200009
- KOTRA 해외시장뉴스 > 영국 UKCA 마킹제도 본격 시행 1년 연장(2021.09.22.)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SITE_NO=3&MENU_ID=90&CONTENTS_NO=1&bbsGbn=244&bbsSn=244&pNttSn=190569
- Nemko : UK Government announces their intention to extend the use of the CE mark indefinitely for businesses
<https://www.nemko.com/blog/uk-govt-to-extend-use-of-ce-mark-indefinitely-for-businesses>
- 국가기술표준원 : 브렉시트 관련 영국 정부 가이드런스
<https://www.kats.go.kr/content.do?cmsid=13&cid=22032&mode=view>

▶ 유럽 전체 강제 인증: CE



유럽연합(EU)에는 통합 강제 인증인 CE 인증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각 품목별로 CE마킹을 요구하는 규정(Regulation) 또는 지침(Directive)이 있으며, 귀사 제품이 해당하는 규정이나 지침이 있을 경우 CE마크를 부착해야 합니다. 대상 품목임에도 CE마크가 없을 경우 유럽 내에서 판매, 유통이 금지됩니다. 단, 어느 지침·규정에도 속하지 않을 경우 CE마킹을 임의로 할 수는 없습니다.

제품 세부 사양 및 특성에 따라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으며 다수의 지침·규정이 중복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CE 인증 취득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https://single-market-economy.ec.europa.eu/single-market/ce-marking/manufacturers_en)

- 1) 적용되는 지침 확인
- 2) 관련된 유럽 규격(EN Standard)에 따라 공인시험기관에서 시험 실시
- 3) 적합성 평가 완료 후 기술문서(제품 안전 및 위험 방지에 대한 기술적인 내용) 작성
- 4) 적합성 선언서(DoC) 작성 / 제 3자 인증서 발급(CoC)
- 5) 제품 출하 시 CE마크 등 부착

▶ CE 유의사항

CE 인증을 받고 마크를 표시하기 위해서는 제품에 따라 국내에 있는 시험기관에서 제품 시험을 실시한 후 자기적합성 선언(DoC: Declaration of Conformity)을 작성하거나 제3자 인증기관에 의한 적합성 인증서(CoC: Certificate of Conformity)를 구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제품 사양 및 용도를 인증기관에 송부하시어 상세절차 및 구비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CE DOC 양식은 아래 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CE Marking_Manufacturers (6번 EU Declaration of Conformity 클릭하여 다운로드)

https://single-market-economy.ec.europa.eu/single-market/ce-marking/manufacturers_en

국제인증기관 한국 지사

국내에 소재한 대표적인 유럽인증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부만 기재)

- Bureau Veritas / 02-555-8922 / www.bureauveritas.co.kr
- Intertek / 02-567-7474 / <http://www.intertek.co.kr>
- SGS / 02-709-4500 / <http://www.sgsgroup.kr/>
- TUV-SUD / 02-3215-1100 / www.tuv-sud.kr
- TUV Rheinland / 02-860-9860 / <https://www.tuv.com/korea/ko/>
- Nemko / 031-330-1700 / <https://www.nemko.com/ko>
- 기타

1381 인증표준정보센터 해외인증자료 신청 방법

해당 자료는 제품 분류 및 품목에 대한 일반적인 규제 및 절차로서, 세부 품목에 따라 별도의 절차 및 규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1381 인증표준정보센터에서는 국내기업의 해외수출에 필요한 국가별, 제품별로 적용되는 강제 규제 또는 특정 인증에 대하여 해외정보자료를 무료로 조사하여 드립니다.**

해외인증자료 신청을 원하시는 경우, 자료실에 첨부되어있는 ‘1381 해외인증자료 신청 방법’ 파일을 다운로드, 절차를 참조하시어 신청하시면 제품에 대한 해외 국가의 규제 및 인증 관련 자료를 조사해 드립니다.

문의처

위 내용은 인터넷 상에서 무료로 공개된 자료를 대상으로 검색한 결과로써 최신 현지 정보를 반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영국 현지의 수입업체나 현지 KOTRA 무역관 또는 컨설팅 업체 등 다양한 루트를 통해 확인해 주십시오.

또한 나라별로 통용되고 있으나 비강제 인증의 성격을 띄고 있는 인증도 있습니다. 이는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제조자가 자율적으로 받거나 현지 수입업자에 의해 요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제조자가 현지 시장동향과 주요 타겟층 설정 및 소비자 특성에 따라 전략적으로 판단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현지 동향이나 업계 요구사항, 인증 신뢰도, 소비자 선호도 같은 최신 현지정보는 해당 지역 업계 및 소비자에게 민감하게 대응할 수 있는 수입업자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하며 KOTRA 현지무역관에 수출관련 무역정보 및 시장정보를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영국 KOTRA 런던무역관 <https://www.kotra.or.kr/london/subList/4000000221>

TEL : 44-(0)20-7520-5300 / FAX : 44-(0)20-7240-2367 / kotra@kotra.co.uk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http://eu.kita.net/>

- 한국무역협회 Trade Pro 무역상담 1566-5114 http://tradesos.kita.net/trade_sos/tradesos.jsp

유의사항

기업의 수출활동과 관련이 없는 학술·학습 목적의 문의, 해당조사를 통해 수익활동을 하는 컨설팅, 대행기관 등으로부터의 문의는 대응이 불가능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 실무(비용, 소요기간)와 관련된 문의는 인증 업무를 담당하는 인증기관 및 컨설팅업체에 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저희 정보센터에서는 대행기관(컨설팅회사)을 추천해드릴 수 없습니다. 관련 대행기관들은 인터넷 포털에서 검색으로 찾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링크에서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에 등록된 컨설팅기관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 컨설팅기관검색
<https://www.smes.go.kr/globalcerti/info/concList.do?key=9093>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센터 전담대응반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는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주요 인증분야(CE, NMPA, FDA, CPNP, NRTL, FCC, IECEE, PSE 및 ESG·탄소중립 분야)에 대한 전담대응반을 설치하여 유선·모바일·온라인 등을 통해 상시 문의사항 상담 및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 지원대상 : 해외시장 진출(예정) 중소기업
2. 지원내용 : 주요 인증 분야 (유럽 CE, CPNP, 중국 NMPA, 미국 FDA, NRTL, FCC, IECEE, PSE 및 ESG·탄소중립)에 대한 문의 사항 상담 및 교육 지원
3. 상담절차 : 상담 채널 (유선/모바일/온라인) → 주요 인증 분야 문의 → 애로 해결 지원 (유선/1:1상담/게시판 답변)



4. 문의처
 - 유선 ARS 대표번호 : 1577-9911
 - 모바일 카카오톡 채널 검색 : 해외규격인증 전담대응반
 - 온라인 홈페이지 문의 게시판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센터 → 전담대응반 (<https://www.smes.go.kr/globalcert/user/exclusiveCharge/exclusiveChargeOnaList.do>)
5. 운영방법
 - 관리기관 내 대응 채널(유선-ARS, 모바일-카카오톡 채널, 온라인-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하여 상시 애로 접수·상담 운영
 - 미 해결시 방문형 컨설팅과 연계하여 인증전문가 현장 방문을 통한 심층 지원
 - 중소기업 인증 담당자의 인증획득 성공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온·오프라인 인증 교육 실시

※ 주 의 !

1381인증표준콜센터는 해외원문문서의 번역 서비스를 하지 않으며, 간혹 경우에 따라 일부 내용을 번역할 경우에도 그 번역의 완전성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문서 번역은 업체의 몫입니다. 상기 안내 사항은 각 항목 하단에 링크된 참고와 출처 페이지의 일부내용을 발췌, 번역한 것으로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아래의 자료 참고, 출처 링크에서 원문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자료는 온라인 정보에 근거하여 정리한 내용으로 귀사에서 본 자료를 활용할 시 정확한 사실 여부를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 및 소요 기간은 귀사 제품에 적용되는 시험 항목, 시험 기관, 귀사의 관련 서류제출 및 대응 속도에 따라 변수가 있는 사안이므로 해당 인증을 진행하는 인증기관/시험기관의 실무자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귀사 제품의 사양과 함께 해당 인증기관에 연락하여 견적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닌 단순 참고자료이므로 각종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 효력이 없습니다. 1381콜센터에서 제공한 정보의 수정·보완이 필요한 경우 우리 센터에 즉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이 제시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닙니다. 따라서 각종 신고, 이의제기 등의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 자료는 무단 수정/배포 불가합니다.

